

한·미 FTA 협상 결과

2007. 7.

**농 협 중 앙 회
해외경제협력부**

목 차

제1부_농업협상 결과(요약)

1. 농축산물 관세철폐 계획(총괄)	1
2. 품목별 무관세쿼터(TRQ) 현황	3
3. 주요 품목 TRQ 관리방안	4
4. 농업긴급수입관세(ASG) 품목	5
5. ASG 품목 중 무관세 쿼터 현황	6
6. 원산지 규정	7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8
8. 농업관련 투자 및 서비스	8
9. 금융서비스	10

제2부_주요 농축산물 관세철폐 내용

I. 식량작물	12
II. 축산물	27
III. 과일류	42
IV. 채소류	48
V. 인삼	55

제1부_농업협상 결과(요약)

1. 농축산물 관세철폐 계획(총괄)

< 1/2 >

양허 유형	품목 수		수 입 액		주요 품목
		%	(천불)	(%)	
양허 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관세유지 + 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천연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17년,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년,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년+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15년+TRQ	5	0.3	93,47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12년+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년+TRQ	4(8)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년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년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년	2	0.1	1,057	0.0	설탕
15년	103 (2)	6.8	353,28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맥주맥, 보리,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등
12년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 주) 1. 품목수는 HSK 10단위 기준. ()안은 세번 분리된 수량
 2. 품목별 자세한 관세철폐 계획은 제2부의 세부 내용 참조

< 2/2 >

양허 유형	품목 수		수 입 액		주요 품목
		%	(천불)	(%)	
10년	332	21.4	121,840	4.1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사과주스(브릭스 20 이내), 일담배, 자두, 로얄제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버섯 등
9년	1	0.1	0	0.0	신선딸기
7년	41	2.6	59,293	2.0	아이스크림, 살구, 옥수수(팝콘용, 가공용), 포도(조제 저장처리), 사과(조제 저장처리), 사과주스(브릭스 20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잔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년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년	317 (2)	20.6	347,007	11.6	오렌지주스(냉장), 토마토주스, 자두주스, 완두콩, 감자(냉동), 간장, 고추장 등
3년	33	2.1	66	0.0	해조류 등
2년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 등
즉시 철폐	585 (2)	37.9	1,665,517	55.8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원피, 화훼류,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등
계	1,531 (17)	100	2,983,317	100	

주) 1. 품목수는 HSK 10단위 기준. ()안은 세번 분리된 수량

2. 품목별 자세한 관세철폐 계획은 제2부의 세부 내용 참조

2. 품목별 무관세쿼터(TRQ) 현황

	품목별		양허유형	무관세 수입쿼터(TRQ) 물량(톤)		
	실품목	HSK수		제공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	최종연도 제공물량
1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	11	현행관세 유지	제한없음	5,000	5년차 5,628, 그 이후는 매년 복리 3%씩 증가
2	유장분말(식용)	7	10년 철폐	9년	3,000	3,800
3	치즈류	5	15년 철폐	14년	7,000	10,280
	체다치즈		10년 철폐	9년		
4	조제분유(유아용)	2	10년 철폐	9년	700	887
5	버터	2	10년 철폐	9년	200	253
6	천연꿀	1	현행관세 유지	제한없음	200	5년차 225톤, 그 이후는 매년 복리 3%씩 증가
7	보조사료(동물사료)	4	12년 철폐	11년	5,500	7,392
8	사료용 근채류	1	15년 철폐	14년	200,000	200,000
9	식용감자(신선)	1	현행관세 유지	제한없음	3,000	5년차 3,377톤, 그 이후는 매년 복리 3%씩 증가
10	식용대두(가공용)	1	현행관세 유지	제한없음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	5년차 26,523톤, 그 이후는 매년 복리 3%씩 증가
11	오렌지	1	현행관세 유지	제한없음	2,500	5년차 2,814톤, 그 이후는 매년 복리 3%씩 증가
12	인삼	4	18년 철폐	17년	5.7	9.1
13	보리	2	15년 철폐	14년	2,500	3,234
14	변성전분	2	12년 철폐	11년	14,000	18,815
15	맥아 및 맥주맥	2	15년 철폐	14년	9,000	11,642
16	옥수수전분	1	15년 철폐	14년	10,000	14,685
※ 실품목수 16개						

주) 품목별 자세한 TRQ 현황은 제2부의 세부 내용 참조

3. 주요 품목 TRQ 관리방안

품목명	TRQ 관리 방식	양허 유형
오렌지	10년차까지 수입권 공매 11년차 이후 실수요자 배정 (과거 물량 기준) - 농수산물유통공사	5년차이후 TRQ 물량 3% 복리 증가
천연꿀	분기별 공매 (3/6/9/12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5년차이후 TRQ 물량 3% 복리 증가
버터	수입권 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	10년 철폐
치즈류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 한국유가공협회	15년 철폐
보리·맥아·맥주맥	선착순 방식 - 농수산물유통공사	15년 철폐
옥수수전분	선착순 방식 - 농수산물유통공사	15년 철폐
식용유장/조제분유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 한국유가공협회	10년 철폐
분유(탈지/전지), 연유	분기별 공매 (3/6/9/12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5년차이후 TRQ 물량 3% 복리 증가
감자 (신선/냉장)	수입권 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	5년차이후 TRQ 물량 3% 복리 증가
인삼	수입권 공매 - 농수산물유통공사	18년 철폐

- 주) 1. 품목별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가 되면 TRQ 관리 종료
2. 품목별 자세한 TRQ 관리방안은 제2부의 세부 내용 참조

4. 농업긴급수입관세(ASG) 품목

	품목별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적용 기간(년)
	실 품목	HSK수			
1	쇠고기	6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	2	8,250	13,938	10
3	마늘	4	1,148	2,297	18
4	양파	2	2,904	5,808	18
5	고추	5	827	1,655	18
6	녹두, 팥	2	238	714	15
7	고구마	4	212	530	10
8	서류	1	30	30	10
9	사과	후지	9,000	20,429	23
		기타			10
10	녹차	2	8.3	16.6	18
11	생강	1	573	1,147	18
12	맥주맥/맥아	2	9,000	11,875	15
13	보리	2	2,500	3,299	15
14	옥수수(팝콘용)	1	5,112	11,246	7
15	옥수수(가공용)	1	187,547	412,603	7
16	메밀/기타곡물	2	250	750	15
17	기타가공곡물	5	128	299.10	15
18	감자 분/플레이크	2	5,000	6,524	10
19	옥수수전분	1	10,000	15,126	15
20	감자전분	1	239	717	15
21	매니옥전분	1	433	1,299	15
22	고구마전분	1	202	606	15
23	기타전분	1	53	159	15
24	낙화생	2	140	281	18
25	참깨	1	3,561	7,121	18
26	참기름	1	30	61	18
27	인삼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	62	103	20
		홍삼분, 홍삼엑스 등 홍삼가공품			18
28	설탕	2	833,071	1,460,794	20
29	발효주정	1	236	708	15
30	텍스트린(변성전분)	2	14,000	19,379	12
※ 실품목수 30개					

주) 품목별 자세한 ASG발동요건은 제2부의 세부내용 참조

5. ASG 품목 중 무관세쿼터 현황

	품목명	양허유형	최초연도 발동기준 물량(톤)	무관세 쿼터			비고
				제공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최종연도 제공물량(톤)	
1	녹두/ 팔	15년 철폐	238	14년	119	690	
2	고구마	10년 철폐	212	9년	106	509	
3	기타서류	10년 철폐	30	9년	30	30	
4	보리	15년 철폐	2,500	14년	2,500	3,234	TRQ
5	맥주맥/맥아	15년 철폐	9,000	14년	9,000	11,642	TRQ
6	옥수수(가공용)	7년 철폐	187,547	6년	93,774	393,849	
7	옥수수(팍콘용)	7년 철폐	5,112	6년	2,556	10,735	
8	메밀/기타곡물	15년 철폐	250	14년	125	725	
9	기타가공곡물	15년 철폐	128	14년	64	281.51	
10	감자분/플레이크	10년 철폐	5,000	9년	5,000	6,334	
11	옥수수전분	15년 철폐	10,000	14년	10,000	14,685	TRQ
12	고구마전분	15년 철폐	202	14년	0.5	7.0	
13	감자전분	15년 철폐	239	14년	0.5	7.0	
14	기타전분	15년 철폐	53	14년	0.5	7.0	
15	매니옥전분	15년 철폐	433	14년	0.5	7.0	
16	발효주정	15년 철폐	236	14년	118	684	
17	변성전분	12년 철폐	14,000	11년	14,000	18,815	TRQ
※ 실품목수 17개							

주) 품목별 자세한 ASG발동요건 및 무관세쿼터 현황은 제2부의 세부내용 참조

6. 원산지 규정

가. 완전생산기준

- 화훼, 채소, 과일, 곡물류, 닭고기는 당사국에서 재배(사육)하고 수확(도축)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원산지로 인정

※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사육)하거나 수확(도축)한 작물(닭고기)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

나. 도축국 기준

- 닭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 도축국을 원산지로 인정
- 이 경우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조건을 우회한 수입을 방지

다. 가공농산물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 제3국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찰쌀 등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과일,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SPS 정례 위원회 설치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 SPS 정례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합의
- 동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의 기술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항 삽입

8. 농업관련 투자 및 서비스

가. 현재 유보

☐ 농축산업 투자

- 외국인은 벼 및 보리 재배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육우 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 관련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 도·소매 유통서비스(국경간 서비스 무역)

-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운반·매매·보존(냉동저장), 식품공급, 식품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 수의 서비스

- 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 수의사법 제17조

□ 유통서비스-농축산업

-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 대한민국 내에서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 공영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다.
- 공관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한다.
- 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제12조, 축산법 제24조 및 제27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사업법 제2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

< 용어설명 : 현재유보 >

당사국의 협정상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예외적 경우로 협정상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현행법을 기재해 놓은 것

나. 미래유보

- 대한민국은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중개업, 도매업(수입업 포함), 소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용어설명 : 미래유보〉

당사국의 협정상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예외적 경우로 협정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분야를 기재해 놓은 것

9. 금융 서비스

가.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 우리나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우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정부의 특별대우는 현재 시중은행이 누리지 못하는데 국책금융기관은 누리고 있는 일체의 혜택을 포함함
- 대상 : 농협,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수협

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보험)

- 현행법상 우리나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의 감독을 받음
-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됨.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민간보험업자가 공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최소한 이 협정 발효 후 3년이내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함

제2부_주요 농축산물 관세철폐 내용

I. 식량작물

1. 쌀

- ☐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2. 대두

가. 관세양허

- ☐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쿼터(TRQ) 제공
 - 대상품목 : 1201.00.9000(식용대두, 현행관세 487%)
※ 대두(기타)는 이번 협상에서 식용대두와 장유박용 대두로 세번이 분리
- ☐ 협정 발효 즉시 철폐
 - 대상품목 : 1201.00.1000(채유 및 박용 대두, 현행관세 487%),
1201.00.9000(장유박 및 간장용 대두, 현행관세 487%),
1208.10.0000(대두 종자분조분, 현행관세 3%)
- ☐ 7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1516.20.2050(대두유와 그 분획물, 현행관세 8%)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1507.90.9000(대두유/기타, 현행관세 8%)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 해당 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대상품목 : 1201.00.9000(식용대두)

- TRQ 물량

연도	물량(톤)	비 고
1년차	10,000	5년차 후부터, 무관세 쿼터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하며, 기간은 제한 없음
2	20,000	
3	25,000	
4	25,750	
5	26,523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대두가공업자들의 조합에 의해 운용
- 조합은 대두가공 실수요자들에게 TRQ를 자율 기준에 따라 배분,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선착순 방식으로 수입허가를 자동 발급

3. 감자

가. 관세양허

□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쿼터(TRQ) 제공

- 대상품목 : 0701.90.0000(식용감자/신선·냉동 현행관세 304%)

※ 감자(기타)는 이번 협상에서 식용감자와 칩용감자로 세번 분리

□ 계절관세 적용 : 12월1일-4월30일까지는 즉시 무관세 적용, 5월1일-11월30일까지는 협정 발효 7년차까지 현행관세 유지 후 8년차 1월 1일에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701.90.0000(감자 칩용, 현행관세 304%)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710.10.0000(냉동감자, 현행관세 27%), 0712.90.2093(건조감자, 현행관세 27%)

- 7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7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 대상품목 : 2005.20.1000(감자플레이크로 만든 크로켓/조제품, 현행관세 20%)
-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9년차까지 무관세 쿼터 제공
 - 대상품목 : 1105.10.0000(감자분, 현행관세 304%) 및 1105.20.0000(감자플레이크, 현행관세 304%)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14년차까지 무관세 쿼터 제공
 - 대상품목 : 1108.13.0000(감자전분, 현행관세 455%)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및 무관세 쿼터 제공

- 대상품목 : 1105.10.0000(감자분), 1105.20.0000(감자플레이크), 1108.13.0000(감자전분)

- 1105.10.0000(감자분), 1105.20.0000(감자플레이크)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5,000	5,150	5,305	5,464	5,628	5,796
ASG 관세율	294.3	284.5	274.8	265.1	255.4	214.6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톤)	5,970	6,149	6,334	6,524	해당없음
ASG 관세율	199.7	184.8	169.9	155.0	0

- ASG 발동수준 이내 물량은 선착순 무관세로 수입

○ 1108.13.0000(감자전분)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239	299	359	418	478	502
- 무관세 쿼터 물량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445.3	435.6	425.9	416.2	406.5	365.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526	550	574	598	621	645
- 무관세 쿼터 물량	3.5	4.0	4.5	5.0	5.5	6.0
ASG 관세율	351.0	336.1	321.2	306.4	234.8	214.8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669	693	717	해당없음
- 무관세 쿼터 물량	6.5	7.0	7.5	해당없음
ASG 관세율	194.7	174.7	154.7	0

- 무관세 쿼터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수입

다. 무관세 쿼터(TRQ)

□ 대상품목 : 0701.90.0000(신선·냉동 식용감자, 칩용 및 종자용 제외)

- TRQ 물량

연도	물량(톤)	비고
1년차	3,000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하며, 기간은 제한없음
2	3,090	
3	3,183	
4	3,278	
5	3,377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방식으로 운영

4. 보리

가. 관세양허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1003.00.9090(기타 보리, 현행관세 299.7%), 1107.20.1000(맥아 혼연한 것, 269%), 1102.90.1000(보리가루, 260%), 1103.19.1000 분쇄물 조분(보리의 것, 현행관세 260%) 등

□ 15년 철폐, ASG 적용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14년차까지 TRQ 제공
- 대상품목 : 1003.00.9010(겉보리, 현행관세 324%), 1003.00.9020(쌀보리, 현행관세 299.7%), 1003.00.1000(맥주맥, 현행관세 513%), 1107.10.0000(맥아, 현행관세 269%)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1003.00.9010(겉보리), 1003.00.9020(쌀보리),
1003.00.1000(맥주맥), 1107.10.0000(맥아)

○ 1003.00.9010(겉보리), 1003.00.9020(쌀보리)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ASG 관세율	겉보리	317.1	310.2	303.3	296.4	289.4	260.5
	쌀보리	293.3	286.9	280.5	274.1	267.7	241.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ASG 관세율	겉보리	249.9	239.3	228.7	218.2	167.2	152.9
	쌀보리	231.2	221.4	211.6	201.8	154.6	141.5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3,171	3,234	3,299	해당없음
ASG 관세율	겉보리	138.7	124.4	110.2	0
	쌀보리	128.3	115.1	101.9	0

○ 1003.00.1000(맥주맥), 1107.10.0000(맥아)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ASG	맥주맥	502.1	491.1	480.2	469.2	458.3	412.5
세울	맥아	263.3	257.5	251.8	246.0	240.3	216.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10,135	10,338	10,545	10,756	10,971	11,190
ASG	맥주맥	395.7	378.9	362.2	354.4	264.7	242.1
세울	맥아	207.5	198.7	189.9	181.1	138.8	127.0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ASG	맥주맥	219.6	197.0	174.4	0
세울	맥아	115.1	103.3	91.5	0

다. 무관세쿼터(TRQ)

□ 대상품목 : 1003.00.9010(겉보리), 1003.00.9020(쌀보리)

- TRQ 물량

연도	1년차	2	3	4	5	6	7	8
물량(톤)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2,815	2,872

연도	9	10	11	12	13	14	15
물량(톤)	2,929	2,988	3,047	3,108	3,171	3,234	무제한

-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선착순 방식으로 관리

☐ 대상품목 : 1003.00.1000(맥주맥), 1107.10.0000(맥아)

- TRQ 물량

연도	1	2	3	4	5	6	7	8
물량(톤)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10,135	10,338
연도	9	10	11	12	13	14	15	
물량(톤)	10,545	10,756	10,971	11,190	11,414	11,642	무제한	

-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선착순 방식으로 관리

5. 옥수수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대상품목 : 1005.90.1000(사료용 옥수수, 현행관세 328%)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712.90.2091(종자용 단옥수수, 현행관세 370%), 0712.90.2092(기타 단옥수수, 현행관세 370%), 1005.10.0000(종자용 옥수수, 현행관세 328%)

☐ 7년 철폐 및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1005.90.2000(팝콘용 옥수수, 현행관세 630%), 1005.90.9000(옥수수 기타, 현행관세 328%)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 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철폐하되 14년차까지 TRQ 제공
- 대상품목 : 1108.12.0000(옥수수 전분/식품용, 현행관세 226%)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1108.12.0000(옥수수전분), 1005.90.2000(팝콘용 옥수수), 1005.90.9000(기타 옥수수)

○ 1108.12.0000(옥수수전분)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ASG 관세율	221.2	216.4	211.5	206.7	201.9	181.7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11,941	12,299	12,668	13,048	13,439	13,842
ASG 관세율	174.3	166.9	159.6	152.2	116.6	106.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ASG 관세율	96.7	86.8	76.8	0

○ 1005.90.2000(팝콘용 옥수수)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발동수준(톤)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중간 발동수준(톤)	2,556	3,994	5,751	7,828	해당없음	
주 ASG 세율(%)	601.2	572.4	543.6	514.8	486.0	365.4
중간 ASG 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발동수준(톤)	11,246	해당없음
주 ASG 세율(%)	3,213	0

- 중간 ASG 발동수준 이하의 모든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무관세로 수입
- 중간 ASG 발동수준 초과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위 세율로 수입
- 5차년도 부터는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모두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 수입

○ 1005.90.9000(기타 옥수수)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발동수준(톤)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중간 발동수준(톤)	93,774	146,521	210,990	287,181	해당없음	
주 ASG 세율(%)	313.0	298.0	283.0	268.0	253.0	190.2
중간 ASG 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주 발동수준(톤)	412,603	해당없음
주 ASG 세율(%)	167.3	0

- 중간 ASG 발동수준 이하의 모든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 무관세로 수입
- 중간 ASG 발동수준 초과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위 세율로 수입
- 5차년도 부터는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모두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 수입

다. 무관세쿼터(TRQ)

□ 대상품목 : 1108.12.0000(옥수수전분)

연도	1	2	3	4	5	6	7	8
물량(톤)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11,941	12,299
연도	9	10	11	12	13	14	15	
물량(톤)	12,668	13,048	13,439	13,842	14,258	14,685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한 선착순 방식의 TRQ 관리

6. 고구마

가. 관세양허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 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무관세 쿼터 제공
- 대상품목 : 1108.19.1000(고구마 전분, 현행관세 241.2%)

□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 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무관세 쿼터 제공
- 대상품목 : 0714.20.1000(고구마/신선, 현행관세 385%), 0714.20.2000(고구마/건조, 현행관세 385%), 0714.20.3000(고구마/냉장, 현행관세 385%), 0714.20.9000(고구마/기타, 현행관세 385%)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고구마 전분(1108.19.1000), 고구마 신선(0714.20.1000), 고구마 건조(0714.20.2000), 고구마 냉장(0714.20.3000), 고구마 기타(0714.20.9000)

○ 1108.19.1000(고구마 전분)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202	253	303	354	404	424
- 무관세 물량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236.1	230.9	225.8	220.6	215.5	193.9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444	465	485	505	525	545
- 무관세 물량	3.5	4.0	4.5	5.0	5.5	6.0
ASG 관세율	186.0	178.2	170.3	162.4	124.5	113.8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566	586	606	해당없음
- 무관세 물량	6.5	7.0	7.5	해당없음
ASG 관세율	103.2	92.6	82.0	0

- 무관세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수입

○ 0714.20.1000(신선 고구마), 0714.20.2000(건조 고구마), 0714.20.3000(냉장 고구마), 0714.20.9000(기타 고구마)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발동수준(톤)	212	265	318	371	424	445
중간 발동수준(톤)	106	166	239	325	해당없음	
주 ASG 세율(%)	372.7	360.4	348.0	335.7	323.4	271.8
중간 ASG 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주 발동수준(톤)	466	488	509	530	해당없음
중간 발동수준(톤)	252.9	234.1	215.2	196.4	0

- 중간 ASG 발동수준 이하의 모든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무관세로 수입
- 중간 ASG 발동수준 초과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위 세율로 수입
- 5차년도부터는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모두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 수입

다.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식량작물

가. 관세양허

-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 쿼터 제공
 -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하되 무관세 쿼터 제공
- ☐ 대상품목 : 1008.10.0000(메밀, 현행관세 256.1%), 1008.90.0000(기타 곡물, 현행관세 800.3%), 713.31.9000(녹두, 현행관세 607.5%), 0713.32.9000(팥, 현행관세 402.8%)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1008.10.0000(메밀), 1008.90.0000(기타 곡물),
0713.31.9000(녹두), 0713.32.9000(팥)

○ 메밀, 기타 곡물

- 발동기준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발동수준(톤)		250	313	375	438	500	525
중간 발동수준(톤)		125	195	281	383	해당없음	
주ASG	메밀	250.6	245.2	239.7	234.2	228.8	205.9
	기타곡물	783.2	766.2	749.1	732.0	714.9	643.4
중간 ASG 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발동수준(톤)		550	575	600	625	650	675
주 ASG	메밀	197.5	189.2	180.8	172.4	132.1	120.9
	기타곡물	617.3	591.2	565.0	538.9	413.0	377.7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발동수준(톤)		700	725	750	해당없음
주 ASG	메밀	109.6	98.3	87.1	0
	기타곡물	342.5	307.3	272.1	0

- 중간 ASG 발동수준 이하의 모든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무관세로 수입
- 중간 ASG 발동수준 초과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위 세율로 수입
- 5차년도부터는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모두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 수입

○ 0713.31.9000(녹두), 0713.32.9000(팥)

- 발동기준

이행년도		1	2	3	4	5	6
주 발동수준(톤)		238	298	357	417	476	500
중간 발동수준(톤)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주 ASG	녹두	594.5	581.6	568.6	555.7	542.7	488.4
	팥	411.8	402.8	393.9	384.9	375.9	338.3
중간 ASG 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주 발동수준(톤)		524	547	571	595	619	643
주 ASG	녹두	468.6	448.7	428.9	409.1	313.5	286.7
	팥	324.6	310.8	297.1	283.3	217.1	198.6

이행년도		13	14	15	16
주 발동수준(톤)		666	690	714	해당없음
주 ASG	녹두	260.0	233.3	206.6	0
	팥	180.1	161.6	143.1	0

- 중간 ASG 발동수준 이하의 모든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무관세로 수입
- 중간 ASG 발동수준 초과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1차-4차년도까지는 위 세율로 수입
- 5차년도부터는 주 ASG 발동수준 이하 물량은 모두 선착순에 따라 무관세 수입

다.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II. 축산물

1. 쇠고기

가. 관세양허

☐ 15년 철폐 및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40%) : 0201.10.0000(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0201.20.0000(기타의 것으로 뼈채 절단/신선 냉장), 0201.30.0000(뼈 없는 것/신선 냉장), 0202.10.0000(도체와 이분도체/냉동), 0202.20.0000((기타의 것으로 뼈채 절단/냉동), 0202.30.0000((뼈 없는 것/냉동)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대상품목 : 위와 같음

- 발동 조건

이행 연도	1	2	3	4	5	6
발동수준	270천톤	276	282	288	294	300
ASG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연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306	312	318	324	330	336
ASG 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연도	13	14	15	16
발동수준(톤)	342	348	354	-
ASG 관세율	24.0	24.0	24.0	0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2. 쇠고기 식용설육

가. 관세양허

-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6.10.0000(소 식용설육/신선 냉장), 0206.21.0000(혀/냉동), 0206.22.0000(간장/냉동), 0206.29.1000(꼬리/냉동), 0206.29.2000(족/냉동), 0206.29.9000(기타/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210.20.1000(육과 식용설육/건조/훈제), 0210.20.9000(육과 식용설육/기타)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3. 소(생우)

가. 관세양허

- ☐ 즉시 철폐 : 협정 발효일(이행 1년차)부터 관세 즉시 철폐
 - 대상품목(현행관세 89.1%) : 0102.10.1000(젓소/번식용), 0102.10.2000(육우/번식용), 0102.10.9000(기타/번식용)
- ☐ 기존의 무관세 계속 유지
 - 대상품목 : 0102.90.9000(소/기타)
-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40%) : 0102.90.1000(젓소/기타)
-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40%) : 0102.90.2000(육우/기타)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4. 돼지고기

가. 관세양허

- 2014년 관세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2.5%) : 0203.11.0000(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0203.12.0000(넓적다리 살·어깨 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신선 냉장)
 - 대상품목(현행 관세 25%) : 0203.21.0000(도체와 이분도체/냉동), 0203.22.0000(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냉동), 0203.29.1000(삼겹살/냉동) 0203.29.9000(기타/냉동)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2.5%) : 0203.19.1000(삼겹살/신선 냉장), 0203.19.9000(기타/신선 냉장)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대상 : 0203.19.1000(삼겹살/신선 냉장), 0203.19.9000(기타/신선 냉장)
- 발동 조건

이행연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8,250	8,745	9,270	9,826	10,415	11,040
ASG 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연도	7	8	9	10	11
발동수준(톤)	11,703	12,405	13,149	13,938	-
ASG 세율(%)	14.6	13.8	12.4	11.3	0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5. 돼지고기 식용설육

가. 관세양허

- ☐ 2014년 관세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6.30.0000(돼지 설육/신선 냉장), 0206.41.0000(간장/냉동), 0206.49.1000(족/냉동), 0206.49.9000(기타/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25%) : 0210.11.0000(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0210.19.0000(기타)
 - 대상품목(현행 관세 30%) : 0210.12.0000(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6. 닭고기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0%) : 0207.12.9000(기타/미절단/냉동), 0207.14.1090(닭 기타 절단육/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7.13.1010(닭다리/냉장), 0207.13.1020(닭가슴/냉장), 0207.13.1030(닭날개/냉장), 0207.13.1090(기타 절단육/냉장)
 - 대상품목(현행 관세 22.5%) : 0207.13.2010(닭 간장/냉장), 0207.14.2010(닭 간장/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207.13.2090(닭 기타 설육/냉장), 0207.14.2090(닭 기타설육/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20%) : 0207.14.1010(닭다리/냉동)
-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7.11.1000(550g 이하 닭고기/미절단/냉장), 0207.11.9000(기타/미절단/냉장)
 - 대상품목(현행 관세 20%) : 0207.12.1000(550g 이하 닭고기/미절단/냉동), 0207.14.1020(닭가슴/냉동), 0207.14.1030(닭날개/냉동)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7. 오리고기(거위·기니아 포함)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7.32.0000(미절단/냉장), 0207.35.1000(절단육/냉장)
 - 대상품목(현행 관세 22.5%) : 0207.34.0000(지방간/냉장), 0207.35.2010(간장/냉장), 0207.36.2010(간장/냉동)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207.35.2090(기타 설육/냉장), 0207.36.2090(기타설육/냉동)

-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18%) : 0207.33.0000(미절단/냉동), 0207.36.1000(절단육/냉동)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8. 낙농품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협정 발효일(이행 1년차)부터 현행관세 49.5% 철폐

- 대상품목 : 0404.10.1010(유장분말/사료용), 0404.10.1090(유장/기타,사료용), 0404.10.2110(변성유장/유당제거, 사료용), 0404.10.2120(변성유장/무기질 제거, 사료용), 0404.10.2130(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사료용), 0404.10.2190(변성유장/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사료용), 0404.10.2900(변성유장/기타, 사료용)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 관세 36%) : 0401.30.1000(냉동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0403.10.1000(요구르트/액상), 0403.10.2000(요구르트/냉동), 0403.10.9000(요구르트/기타), 0403.90.2000(응고유와응고크림), 0403.90.3000(케피어), 0403.90.9000(기타 밀크와 크림/발효 또는 산성화 된 것), 0404.90.0000(유장/기타), 0406.10.2000(커드), 0406.40.0000(블루바인 치즈)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36%) : 0401.30.9000(크림기타/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36%) : 0401.10.0000(밀크와 크림/미농

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 0401.20.0000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

□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대상품목 : 0402.10.1010(탈지분유/지방이 전중량의 1.5% 이하), 0402.10.1090(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10.9000(분유 기타/감미 첨가), 0402.21.1000(전지분유/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초과), 0402.21.9000(분유 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29.0000(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0402.91.1000(무당 연유), 0402.91.9000(연유 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99.1000(가당연유), 0402.99.9000(연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0403.90.1000(버터밀크)

□ 10년 철폐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89%) : 0405.10.0000(버터), 0405.90.0000(밀크에서 얻어진 지와 유)
- 대상품목(현행관세 36%) : 1901.10.1010(조제분유)
- 대상품목 (현행관세 40%) : 1901.10.1090(조제분유/기타)

□ 15년 철폐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36%) : 0406.10.1000(치즈/신선), 0406.20.0000(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0406.30.0000(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0406.90.0000(치즈/기타/체다치즈 포함)

- 발효즉시 20%로 인하, 10년 철폐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협정 발효 1년차에 20%로 인하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49.5%) : 0404.10.1010(유장분말), 0404.10.1090(유장/기타), 0404.10.2110(변성유장/유당제거), 0404.10.2120(변성유장/무기질제거), 0404.10.2130(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0404.10.2190(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0404.10.2900(변성유장/기타)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대상품목 : 0402.10.1010(탈지분유/지방이 전중량의 1.5% 이하), 0402.10.1090(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10.9000(분유 기타/감미 첨가), 0402.21.1000(전지분유/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초과), 0402.21.9000(분유 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29.0000(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0402.91.1000(무당연유), 0402.91.9000(연유 기타/설탕·감미 미첨가), 0402.99.1000(가당연유), 0402.99.9000(연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0403.90.1000(버터밀크)

- TRQ 물량

연 도	물 량(톤)	비 고
1년차	5,000	5년차 후부터 쿼터 물량을 매년 3%씩 복리로 증량하며, 기간은 제한 없음
2	5,150	
3	5,305	
4	5,464	
5	5,628	

- TRQ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분기별(12월, 3월, 6월, 9월)로 공매

□ 대상품목(현행 관세 49.5%) : 0404.10.1010(유장분말), 0404.10.1090(유장/기타), 0404.10.2110(변성유장/유당제거), 0404.10.2120(변성유장/무기질제거), 0404.10.2130(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0404.10.2190(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0404.10.2900(변성유장/기타)

- TRQ 물량(톤)

연도	1년차	2	3	4	5	6	7	8	9	10
TRQ	3,000	3,090	3,183	3,278	3,377	3,478	3,582	3,690	3,800	무제한

- 관세율 할당은 한국유가공협회에 의해 운영되며, 과거 및 신규 수입자(실수요자)에게 배분되는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운영

- TRQ 물량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

□ 대상품목(현행관세 89%) : 0405.10.0000(버터), 0405.90.0000(밀크에서 얻어진 지와 유)

- TRQ 물량(톤)

연도	1년차	2	3	4	5	6	7	8	9	10
TRQ	200	206	212	219	225	232	239	246	253	무제한

- TRQ 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

- TRQ 배분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함

- 대상품목 : 1901.10.1010(조제분유, 현행관세 36%),
1901.10.1090(조제분유/기타, 현행관세 40%)

- TRQ 물량(톤)

연도	1년차	2	3	4	5	6	7	8	9	10
TRQ	700	721	743	765	788	811	836	861	887	무제한

- TRQ는 한국유가공협회에 의해 운영되며, 과거 및 신규 수입자(실수요자)에게 배분되는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운영
- TRQ 물량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

- 대상품목(현행 관세 36%) : 0406.10.1000(치즈/신선), 0406.20.0000(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0406.30.0000(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0406.90.0000(치즈/기타/체다치즈 포함)

- TRQ 물량(톤)

연도	1년차	2	3	4	5	6	7	8	9	10
TRQ	7,000	7,210	7,426	7,649	7,879	8,115	8,358	8,609	8,867	9,133

연도	11	12	13	14	15
TRQ	9,407	9,690	9,980	10,280	무제한

- 관세율 할당은 한국유가공협회에 의해 운영되며, 과거 및 신규 수입자(실수요자)에게 배분되는 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운영
- TRQ 물량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

9. 천연꿀

가. 관세양허

- ☐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 쿼터(TRQ) 제공
- 대상품목(243% 또는 1,864원/kg) : 0409.00.0000(천연꿀)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 대상품목(243% 또는 1,864원/kg) : 0409.00.0000(천연꿀)
- TRQ 물량

연 도	물 량(톤)	비 고
1년차	200	5년차 후부터 쿼터 물량을 매년 3%씩 복리로 증량하며 기간은 제한 없음
2	206	
3	212	
4	219	
5	225	

- TRQ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분기별(12월, 3월, 6월, 9월)로 공매

10. 인조꿀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243%) : 1702.90.1000(인조꿀)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11. 조란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407.00.1010(종란/신선), 0407.00.9000(조란/기타), 0408.91.0000(조란/건조한 것), 0408.99.9000(조란/기타)
-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408.11.0000(난황/건조한 것), 0408.19.0000(난황/기타)
-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현행 관세를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 관세 27%) : 0407.00.1090(조란/기타/신선)
 - 대상품목(현행 관세 41.6%) : 0408.99.1000(조란/닭의 것)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III. 과일류

1. 감귤류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대상품목 : 0805.50.2020(라임/시트리스라티폴리아, 현행관세 144%), 2009.11.0000(냉동오렌지주스, 현행관세 54%)

☐ 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5.50.1000(레몬, 현행관세 30%)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5.40.0000(그레이프프루트, 현행관세 30%), 2007.91.9000(감귤류의 과실조제품, 현행관세 30%), 2009.12.0000(브릭스값 20 이하 오렌지 바냉동 주스, 현행관세 54%), 2009.19.0000(기타 오렌지주스, 현행관세 54%)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5.50.2010(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현행관세 30%), 2007.91.1000(감귤류/잼, 제리, 현행관세 30%)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144%) : 0805.20.1000(신선/건조 감귤),

0805.20.9000(신선 맨더린),0805.90.0000(기타 신선/건조 감귤류)

□ 계절관세 적용, 무관세쿼터(TRQ) 제공

- 9월1일부터 2월말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효 1년차
에 관세율 30%로 인하되고 이행 2년차 1월1일을 시작으로 6단
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7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5.10.0000(신선 오렌지, 현행관세 50%)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적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쿼터(TRQ)

□ 대상품목 : 0805.10.0000(신선오렌지)

- TRQ 물량

연도	물량(톤)	비 고
1	2,500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하되 기간 제한 없음
2	2,575	
3	2,652	
4	2,732	
5	2,814	

-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공매, 11년차부터
는 가장 최근 3년 기간의 과거실적에 기초하여 수입허가 배분
- 공매와 과거실적에 기초한 수입허가의 배분은 매년 8월에 수
행되며, 무관세 물량은 9월1일부터 2월말까지 수입

- 수입허가 자격은 대한민국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자로 등록된 인(人) 또는 실체(생산자단체 포함)

2. 포도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대상품목 : 2204.21.1000(2리터이하 적포도주, 현행관세 15%), 2204.21.9000(2리터이하 기타 포도주, 현행관세 15%), 0806.20.0000(건조 포도, 현행관세 21%), 2009.61.0000(브릭스값 30이하 포도주스, 현행관세 45%), 2009.69.0000(기타 포도주스, 현행관세 45%)

☐ 계절관세 적용

-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효일부터 매년 균등 감축하여 17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10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효 1년차에 관세율이 24%로 인하되고 2년차 1월1일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감축 후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6.10.0000(신선 포도, 현행관세 45%)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3. 사과

가. 관세양허

- ☐ 7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7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2009.79.0000(기타 사과주스, 현행관세 45%)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이행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2009.71.0000(브릭스값 20 이하 사과주스, 현행관세 45%)
- ☐ 10년 철폐,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45%) : 0808.10.0000(기타 사과),
- ☐ 20년 철폐,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08.10.0000(신선 후지, 현행관세 45%)
 - ※ 신선사과는 이번 협상에서 후지와 기타 사과로 세번 분리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 대상품목 : 0808.10.0000(기타 사과), 0808.10.0000(후지)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9,000	9,000	9,000	9,000	12,000	12,360
ASG 관세율(%)	45	45	45	45	45	33.7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12,731	13,113	13,506	13,911	14,329	14,758
ASG 관세율(%)	33.75	33.75	33.75	33.75	27	27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발동수준(톤)	15,201	15,657	16,127	16,611	17,109	17,622
ASG 관세율(%)	27	27	27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22	23	24
발동수준(톤)	18,151	18,696	19,257	19,834	20,429	해당없음
ASG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0

- 발동수준은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사과 총량임. 이행 11년차부터는 비후지사과에 대해서는 ASG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4. 배

가. 관세양허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 : 0808.20.1000(기타 배, 현행관세 45%)

☐ 2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 0808.20.1000(동양배, 현행관세 45%)

※ 신선배는 이번 협상에서 동양배와 기타 배로 세번 분리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5. 복숭아(넥타린 포함)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 : 0809.30.0000(신선 복숭아/넥타린 포함, 현행관세 45%), 2009.80.1010(복숭아 주스, 현행관세 50%), 2008.70.1000(복숭아/가당/밀폐용기, 현행관세 50%)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IV. 채소류

1. 고추

가. 관세양허

□ 15년 철폐,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 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270% or 6,210원/kg)
 : 0709.60.1000(신선·냉장 단고추), 0709.60.9000(기타신선·냉장 고추), 0904.20.1000(건고추/파쇄 또는 분쇄 않은 것), 0904.20.2000(고추가루), 0711.90.5091(일시저장처리 고추)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 품목 : 0709.60.1000(신선단고추), 0709.60.9000(기타신선 고추), 0904.20.1000(건고추), 0904.20.2000(고추가루), 0711.90.5091(일시저장처리)

- 발동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827.0	886.1	945.3	1,004.4	1,063.6	1,122.7
ASG 관세율(%)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1,181.9	1,241.0	1,300.1	1,359.3	1,418.4	1,477.6
ASG 관세율(%)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톤)	1,536.7	1,595.9	1,655.0	1,655.0	해당없음
ASG 관세율(%)	270.0	270.0	270.0	202.5	0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2. 마늘

가. 관세양허

☐ 15년 철폐 및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 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현행관세 360% or 1,800원/kg)
: 0703.20.1000(깐마늘/신선·냉장), 0703.20.9000(통마늘/신선·냉장), 0711.90.1000(일시저장처리 마늘), 0712.90.1000(건조마늘)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0703.20.1000(깐마늘), 0703.20.9000(통마늘), 0711.90.1000(일시저장처리), 0712.90.1000(건조마늘)

- 발동 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1,148.0	1,230.1	1,312.1	1,394.2	1,476.3	1,558.4
ASG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1,640.4	1,722.5	1,804.6	1,886.6	1,968.7	2,050.8
ASG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톤)	2,132.9	2,214.9	2,297.0	2,297.0	해당없음
ASG 관세율(%)	360	360	360	270	0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3. 양과

가. 관세양허

☐ 15년 철폐, ASG 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 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관세 135%) : 0703.10.1000(신선/냉장 양파), 0712.20.0000(건조양파)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품목 : 0703.10.1000(신선양파), 0712.20.0000(건조양파)

- 발동 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2,904.0	3,111.4	3,318.9	3,526.3	3,733.7	3,941.1
ASG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4,148.6	4,356.0	4,563.4	4,770.9	4,978.3	5,185.7
ASG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톤)	5,393.1	5,600.6	5,808.0	5,808.0	해당없음
ASG 관세율(%)	135	135	135	101.3	0

다. 무관세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4. 생강

가. 관세양허

-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910.10.0000(생강, 현행관세 377.3% or931원/kg)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 대상 품목 : 0910.10.0000(생강)
- 발동 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573	614	655	696	737	778
ASG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819	860	901	942	983	1,024
ASG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년도	13	14	15	16~18	19
발동수준(톤)	1,065	1,106	1,147	1,147	해당없음
ASG 관세율(%)	377.3	377.3	377.3	283.0	0

다. 무관세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5. 토마토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대상품목 : 2002.90.1000(토마토펀치스트, 현행관세 5%)
2002.10.0000(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조제저장처리, 현행관세 8%)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2103.20.1000(토마토케첩, 현행관세 8%),
2103.20.2000(토마토소스, 현행관세 45%)

☐ 7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7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702.00.0000(신선/냉장 토마토, 현행관세 45%)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6. 딸기

가. 관세양허

-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11.10.0000(냉동 초분류 딸기, 현행관세 30%), 0811.20.0000(냉동 기타 딸기, 현행관세 30%)
- ☐ 9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9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10.10.0000(신선 초분류 딸기, 현행관세 45%)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12.90.1000(일시저장 처리, 초분류 딸기, 현행관세 45%), 0810.30.0000(신선흑색, 백색 또는 적색커런트와 구즈베리, 현행관세 45%), 0810.40.0000(신선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 과실, 현행관세 45%), 2009.80.1020(딸기주스, 현행관세 50%)
- ☐ 12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2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품목 : 0810.20.0000(신선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현행관세 45%)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 해당사항 없음

7. 오이

가. 관세양허

☐ 즉시 철폐

- 대상 품목 : 0707.00.000(신선/냉장오이, 현행관세 27%)

☐ 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 : 2001.10.0000(오이류/조제저장처리, 현행관세 30%)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 : 0711.40.0000(일시저장처리, 현행관세 30%)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해당사항 없음

다. 무관세 쿼터(TRQ)

☐ 해당사항 없음

V. 인삼

1. 인삼

가. 관세양허

- ☐ 10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 대상 품목(현행관세 20%) : 1302.19.1110(인삼엑스, 백삼), 1302.19.1120(인삼엑스분, 백삼), 1302.19.1190(인삼엑즙·엑스 기타, 백삼)
 - 대상 품목(현행관세 18%) : 1211.20.2120(인삼타브렛 또는 캡슐)

- ☐ 15년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관세 18%) : 1211.20.2110(인삼분/백삼), 1211.20.2190(기타백삼분말)

- ☐ 15년 철폐, ASG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관세 754.3%) : 1302.19.1290(기타홍삼엑즙엑스), 1302.19.1210(홍삼엑스), 1302.19.1220(홍삼엑스분), 1211.20.2210(홍삼분), 1211.20.2220(홍삼타브렛/캡슐), 1211.20.2290(기타홍삼분말), 1211.20.9100(인삼잎 및 줄기), 1211.20.9200(인삼종자), 1211.20.9900(기타 인삼류)

- ☐ 18년 철폐, ASG적용
 - 협정 발효일부터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8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관세 754.3%) : 1211.20.1310(홍삼/본삼),

1211.20.1320(홍삼/미삼), 1211.20.1330(홍삼/잡삼)

□ 18년 철폐, ASG적용, TRQ제공

- 협정 발효일부터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18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 대상 품목(현행관세 222.8%) : 1211.20.1100(수삼), 1211.20.1210(백삼/본삼), 1211.20.1220(백삼/미삼), 1211.20.1240(백삼/잡삼)

나. 농업긴급수입관세(ASG)

□ 대상 품목 :

[그룹1] 1211.20.1100(수삼), 1211.20.1210(백삼/본삼),
1211.20.1220(백삼/미삼), 1211.20.1240(백삼/잡삼)

[그룹2] 1211.20.1310(홍삼/본삼), 1211.20.1320(홍삼/미삼),
1211.20.1330(홍삼/잡삼)

[그룹3] 1211.20.2210(홍삼분), 1211.20.2220(홍삼타브렛/캡슐),
1211.20.2290(기타홍삼분말), 1211.20.9100(인삼 잎 및 줄기), 1211.20.9200(인삼종자), 1211.20.9900(기타),
1302.19.1290(기타홍삼엑즙·엑스), 1302.19.1210(홍삼엑스), 1302.19.1220(홍삼엑스분)

- 발동 조건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톤)	62	64.4	66.8	69.2	71.6	74.1
ASG 관세율(%)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톤)	76.5	78.9	81.3	83.7	86.1	88.5
ASG 관세율(%)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20
발동수준(톤)	90.9	93.4	95.8	98.2	100.6	103.0
ASG 관세율(%)						
그룹1	222.8	222.8	222.8	173.3	170.2	167.1
그룹2	754.3	754.3	754.3	586.7	576.2	565.7
그룹3	754.3	754.3	754.3	565.7	565.7	565.7

다. 무관세 쿼터(TRQ)

□ 대상품목 : 1211.20.1100(수삼), 1211.20.1210(백삼/본삼),
1211.20.1220(백삼/미삼), 1211.20.1240(백삼/잡삼)

연도	1	2	3	4	5	6	7	8	9
물량(톤)	5.7	5.9	6.0	6.2	6.4	6.6	6.8	7.0	7.2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물량(톤)	7.4	7.7	7.9	8.1	8.4	8.6	8.9	9.1	무제한

- TRQ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하여 공매